BK FOUR 21 사업 지원 제작

CAMPUS RIGHTS GUIDE

대학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 지침

학생 대상 안내서

한양대학교 ERICA 인권센터
HANYANG UNIVERSITY HUMAN RIGHTS CENTER

CAMPUS RIGHTS GUIDE

대학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 지침

학생 대상 안내서

Contents

4p **1. 인권과 인권침해**

1.1. 인권이란

5p 1.2. 인권침해란

6p **2. 대학 내 인권침해**

2.1. 대학 내 인권침해의 개념과 유형

14p 2.2. 대학 내 인권침해의 특성

16p **3. 인권침해 Q&A**

22p **4. 인권침해 등에 대한 대응방법**

4.1. 인권침해를 입은 사람

24p 4.2. 목격자·제3자

26p **5. 인권사건 처리 절차**

5.1. 상담 신청 절차

27p 5.2. 사건 처리 절차

28p 5.3. 피해자 보호 및 지원

30p **6. 도움요청 기관**

6.1. 교내 인권센터

32p 6.2. 다양한 지원 기관

34p **7. 피해 자가점검 체크리스트**

36p **[부록] 한양대학교 대학원생 권리장전**

38p 참고자료

39p 한양대학교 ERICA 인권센터로 오시는 길

1. 인권과 인권침해

1.1. 인권이란

인권이란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를 의미하며 모든 사람은 성별, 인종, 연령, 피부색, 출신지역, 장애, 신체조건, 종교, 언어, 혼인, 임신, 사회적 신분, 여러 의견 등에 관계없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가집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인권의 가치를 법률로서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 ·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제1항」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인간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 형제애의 정신으로 행동하여야 한다.
세계인권선언문 제1조

1. 인권과 인권침해

1.2. 인권침해란

인권침해란 인간으로서의 당연히 누구나 누려야 할 존엄·자유·평등의 권리 등이 타인의 행위나 제도·관행에 의해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제한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인권침해를 판단하는 핵심 요소로는 존엄성 침해, 자유 침해, 평등(차별) 침해, 위계 권력에 의한 침해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인권침해는 인간의 존엄과 권리가 침해되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며 행위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권침해는 합법인가의 여부보다 인간의 존엄과 권리가 침해되었는가를 초점으로 하기 때문에 명확한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도 관행처럼 반복되어 왔더라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갈등이나 불편한 상황이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의 내용과 관계, 반복성, 강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 본 매뉴얼은 인권침해 예방과 대응 방법을 안내하기 위한 자료이며, 개별 사건의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대학 내 인권침해

2.1. 대학 내 인권침해의 개념과 유형

대학은 교육과 연구가 함께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구성원이 서로의 존엄과 권리를 존중하는 건강한 연구환경과 학습환경을 조성할 책임이 있습니다. 인권침해 예방과 대응은 이러한 연구환경과 학습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입니다. 대학 내 인권침해는 대학 구성원의 존엄과 권리가 침해되는 모든 행위를 포괄하는 가장 상위의 개념으로 우리 대학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에 따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대학은 교육, 연구, 근로, 생활의 영역이 중첩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다양한 관계 속에서 대학 구성원의 평등권, 학업·연구권, 인격권, 안전권 등 기본적인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학 내 인권침해는 특정한 한 가지 형태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차별, 권력 남용, 부당한 업무 지시, 사생활 침해, 인격 모욕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대학원생의 경우 학업과 연구, 조교 근무와 프로젝트 참여 등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특성 때문에 인권침해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있으며, 지도교수나 연구실 구조로 인해 문제 제기가 어려운 경우도 존재합니다.

대학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인권침해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권침해

❶ 차별 및 평등권 침해

대학 구성원은 성별, 나이, 출신학교, 출신지역, 종교, 정치적 의견, 장애 여부, 성적 지향 등 개인의 특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집니다. 그러나 일부의 경우 특정한 배경이나 개인적 특성을 이유로 불리한 대우를 받거나 배제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학금 추천, 연구기회 및 프로젝트 참여, 학업 평가 등의 과정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구성원이 배제되거나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 경우 평등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❷ 학업·연구권 침해

대학은 학문 활동을 수행하는 공간이며, 대학생과 대학원생은 학업과 연구를 지속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학업·연구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연구와 무관한 과도한 업무 지시로 학업 수행이 어려워지는 경우**
- ☐ **원하지 않는 연구 프로젝트 참여를 강요받는 경우**
- ☐ **연구 참여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
- ☐ **연구 수행에 필요한 정보나 조건을 사전에 안내받지 못하는 경우**

>>> 이러한 상황은 학생이 본인의 연구를 수행할 기회를 제한하거나 학업을 지속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❸ 연구실 내 권력 남용 및 부당한 업무 지시

대학 연구실에서는 지도교수와 대학원생(대학생) 사이에 학위 취득과 연구 수행을 중심으로 한 위계 관계가 형성됩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권한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연구와 무관한 개인적인 업무를 지시하는 경우**
- ☐ **사적 이익을 위한 업무 수행을 요구하는 경우**
- ☐ **부당한 연구비 사용이나 명의 도용을 지시하는 경우**
- ☐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과도한 업무를 강요하는 경우**

>>> 이러한 상황은 권력 관계에 기반한 인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❹ 사생활 침해

대학 구성원은 학업과 연구 활동 외에도 개인의 생활과 사적 영역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연구실 문화나 위계 관계 속에서 다음과 같은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근무시간 외 지속적인 연락이나 업무 지시**
- ☐ **개인의 결혼, 연애, 가족생활 등에 대한 부당한 간섭**
- ☐ **학업과 무관한 사적 활동 참여를 강요하는 경우**

>>> 이러한 행위는 개인의 사생활과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❺ 지식재산권 침해

대학원생(대학생)은 연구 활동에 참여한 경우 자신의 기여도에 따라 연구성과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연구 아이디어나 논문 내용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 ☐ **연구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사람을 공동저자로 포함하도록 강요하는 경우**
- ☐ **연구 결과를 자신의 성과로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 이러한 행위는 연구윤리 문제와 함께 대학원생(대학생)의 지식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❻ 인격권 침해 및 괴롭힘

대학 구성원은 학업과 연구 과정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인격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행위는 인격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 **폭언, 욕설, 모욕적인 발언**
- ☐ **성차별적 발언이나 비하 발언**
- ☐ **강압적인 음주 요구나 부적절한 모임 참여 강요**
- ☐ **불쾌한 신체 접촉이나 성희롱**
- ☐ **신체적 위협이나 폭력**

>>> 이러한 행위는 구성원의 존엄성과 안전을 침해하는 중대한 인권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❼ 공정한 평가 및 심사권 침해

대학에서의 학위 취득과 연구 활동은 공정한 평가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공정한 평가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논문 지도나 평가가 정당한 기준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
- ☐ **지도교수 변경이 합리적인 사유가 있음에도 불가능한 경우**
- ☐ **논문 심사 과정에서 부적절한 요구나 대우가 발생하는 경우**

>>> 공정한 평가를 받을 권리는 학문 활동의 기본적인 권리이며 대학은 이를 보장할 책임이 있습니다.

참고: 국가인권위원회 '대학원생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

2 특정 유형의 인권침해

대학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의 특정 유형으로는 성희롱·성폭력, 교제폭력, 스토킹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성적 요소나 친밀한 관계, 반복적 접근·통제 등의 특성을 가지며 피해자의 안전과 존엄을 중대하게 침해할 수 있어 인권침해로서 다루어지는 동시에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의 보호·지원 절차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사건이 인권침해이면서 동시에 성희롱·성폭력, 교제폭력, 스토킹에 중복하여 해당하는 경우도 있으며, 사안의 성격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과 대응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❶ 성희롱·성폭력

유형	내용
성희롱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性的)인 말이나 행동을 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
성폭력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하는 모든 성적행위를 의미
디지털 성폭력·성범죄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젠더기반폭력을 폭넓게 지칭하며, 그 중에서도 불법촬영, 비동의 유포, 유포협박, 불법합성 등이 현행법상 성범죄로 인정되고 있음

[예시]

- ☐ **수업, 연구실, 동아리 활동 등에서 외모나 신체에 대한 반복적 평가나 성적 농담을 하는 경우**
- ☐ **연구나 평가와 관련된 관계를 이용하여 사적 만남이나 연락을 요구하는 경우**
- ☐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을 하거나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
- ☐ **메신저나 SNS를 통해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요구하거나 전송하는 경우**

❷ 스토킹·교제폭력

유형	내용
스토킹	• **스토킹 행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이나 가족 등에 대해 공·사를 아우르는 생활영역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접근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를 말함. 다음과 같은 스토킹 행위가 반복되거나 지속될 경우 스토킹 범죄로 구분되어 스토킹 처벌법에 의해 처벌이 가능함. **<스토킹 행위의 법적 정의>** ①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방해함 ② 집, 직장, 학교 등 상대방의 일상생활 장소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봄 ③ 원치 않는 전화, 메일, SNS메시지, 사진, 영상 등을 보냄 ④ 선물, 꽃, 물건 등을 보내거나 상대방 주변에 둠 ⑤ 현관문을 부수거나 차에 흠집을 내는 등 상대방 주변 사물을 훼손함 ⑥ 상대방의 개인정보, 위치정보 등을 온라인상에서 공유함 ⑦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온라인상에서 상대방인 척함 • **스토킹 범죄:** 스토킹 행위를'지속적 또는 반복적' 으로 하는 것
교제폭력	교제하는 관계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상대방을 통제하고자 하는 일련의 강압적인 태도 및 행위를 의미함. 이러한 행위는 언어적·정서적·경제적·신체적·성적 폭력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교제관계란 현재뿐 아니라 과거에 교제한 관계, 교제를 시작하는 관계도 포함됨.

참고: 경기도 여성가족재단 스토킹데이트(교제)폭력 피해자 지원 안내서

[예시]



스토킹

- ☐ 상대방이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반복적으로 전화, 메시지, SNS 연락을 하는 경우
- ☐ 학교나 연구실 주변에서 기다리거나 따라다니며 지속적으로 접촉을 시도하는 경우
- ☐ 상대방의 일정을 확인하거나 위치를 추적하려는 행동을 하는 경우



교제폭력

- ☐ 연인 관계에서 상대방의 친구 관계나 활동을 지나치게 통제하는 경우
- ☐ 연애 관계에서 욕설, 협박, 위협 등으로 상대방을 위축시키는 경우
- ☐ 헤어지자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만남을 강요하는 경우

2. 대학 내 인권침해

2.2. 대학 내 인권침해의 특성

대학 내 권력 불균형이 사건 발생에 영향

대학은 교육·연구·노동·생활의 영역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양상 또한 일반적인 조직과는 다른 특성을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연구, 학습, 노동 과정에서 의사결정 권한이나 평가 권한을 가진 위치와 그렇지 않은 위치 간의 권력 불균형이 인권침해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수와 학생, 지도교수와 대학원생, 연구실 책임자와 연구실 구성원, 선·후배, 팀장과 팀원 등과 같이 위계적 관계가 형성된 상황에서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대상에게 부당한 요구, 인격적 모욕, 과도한 통제 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인권침해는 특정 개인의 성향이나 성별에 기인하기보다는 위계적 구조와 권력 관계가 작동하는 환경적 요인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권침해 발생이 지속되는 대학의 구조적 문제

대학은 학위 부여, 논문 지도 및 심사, 연구 참여, 장학금 추천, 진로 및 추천서 작성 등과 같이 학업과 진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권한이 특정 관계에 집중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인권침해가 발생하더라도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하기보다는 상황을 인내하거나 학업 방향 변경, 전공 포기 등으로 대응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전공 분야의 특수성이나 공동체의 폐쇄성이 강한 경우 문제 제기 자체가 어려워지거나 사건이 외부로 알려지기 어렵다는 특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문제 제기의 어려움

대학 내 위계적 관계로 인해 불합리하거나 부당한 행위에 대해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거나 문제를 제기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제기 시 학업, 연구, 진로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학내 또는 학계에서의 관계 단절이나 배제에 대한 걱정, 신원 노출 가능성과 이에 따른 2차 피해 발생 우려 등으로 인해 신고나 상담을 주저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동체의 규모가 작고 폐쇄적인 경우 문제 제기가 피해자 개인뿐만 아니라 조력자에게도 부담이 되거나 주변인과의 갈등, 추가적인 심리적 압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특성은 인권침해가 드러나지 않거나 장기간 지속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인권침해 Q&A

상담 및 신고

Q1. (적용 범위) 제가 겪은 일이 인권침해에 해당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인권센터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나요?

네. 인권센터는 인권침해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담을 통해 사안을 함께 검토하고 해당 사안이 센터의 처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안내합니다. 상담은 신고나 조사로 자동 진행되지 않으며 상담을 통해 문제의 성격과 가능한 대응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Q2. (익명 상담) 피해 입은 일에 대해 상담하고 싶은데 행위자에게 개인정보가 노출될까봐 걱정이 됩니다. 익명으로도 상담이나 신고가 가능한가요?

인권센터는 익명 상담도 가능하며 이를 통해 사건의 성격과 대응 가능 범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식적인 사실 확인이나 사건 처리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사안의 검토를 위해 최소한의 개인정보제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개인정보의 공개범위와 보호조치에 대해 상담과정에서 충분히 안내드리며 신고인의 신원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Q3. (비밀보장) 인권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싶은데 상담내용이 교수님이나 학교에 알려지나요?

인권센터 상담 내용은 비밀유지 원칙에 따라 보호됩니다. 상담을 요청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학과, 학교에 전달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상담을 통해 상황을 정리하고 가능한 대응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를 통해 공식적인 사건처리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관련자에게 내용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신고 가능 범위

Q4. (적용 기간) 인권침해 피해를 겪은 지 5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문제제기가 가능한가요?

각 대학은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문제제기가 가능한 기간을 규정으로 정하고 있으며 적용 기간은 대학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한양대학교는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4년을 경과하면 신고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하므로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인권센터 상담을 통해 안내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Q5. (구성원 여부) 저는 OO대학교를 졸업하였고, 가해자로 지목되는 사람도 현재는 학교 구성원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문제제기가 가능한가요?

대학 인권센터의 사건 처리 대상과 적용 범위는 각 대학의 인권 관련 규정에 따라 제한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사건 당시 또는 현재 학교 구성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당사자 모두가 학교 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행위자에 대한 조치 적용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상담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므로 인권센터에 문의해 보시길 권합니다.

Q6. (제3자 신고) 다른 학생이 인권침해를 당하는 것을 목격했지만, 피해자가 신고를 망설이고 있습니다. 제가 대신 신고하거나 문제제기를 할 수 있나요?

대학 인권센터 규정에 따라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도 상담 또는 신고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제3자 신고의 경우에는 피해 당사자의 의사와 보호가 중요하게 고려되며 공식적인 조사 절차로 진행될지 여부에 있어서도 피해자의 의사가 존중됩니다. 우선 상담을 통해 가능한 대응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건 처리 절차

Q7. (형사 절차 진행 중인 사건) 이미 형사 고소를 하여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인권센터에서 상담하거나 신고할 수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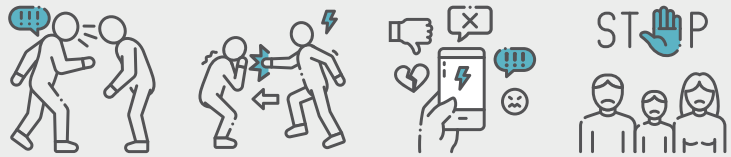
사법기관에서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학내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별도로 인권센터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권센터는 형사적 책임을 판단하는 기관은 아니며 대학의 인권 규정에 따라 학내 차원의 대응과 보호 조치를 검토합니다.

Q8.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인권센터에 신고한 이후,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행위자가 처벌받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상담이나 절차 진행이 가능한가요?

인권센터의 사건 처리 절차는 신고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사안의 성격과 당사자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정이나 중재와 같은 방식으로 문제 해결을 모색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진행 방식은 상담을 통해 안내됩니다.

Q9. (다수 피해자 발생) 행위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저 외에도 여러 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사건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동일한 행위자로 인해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각 피해자의 경험과 요청 사항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와 희망하는 처리 방향을 확인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각 사안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안을 검토합니다.



연구실·대학원

Q10. (근로와 업무요청) 저는 대학원 조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도교수님이 근무시간 외에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업무를 요청하여 학업에 지장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문제제기가 가능한가요?

대학원 조교는 학생 신분이자 근로자 신분을 함께 가지는 경우가 많아 근무시간 외 업무 연락이나 요청의 내용, 빈도, 강제성 등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인권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 내용과 실제 업무 상황을 바탕으로 인권센터 상담을 통해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Q11. (2차 피해) 인권센터에 신고한 사실을 알게 된 행위자가 연락을 하여 사과를 하겠다거나 신고를 철회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사건 이후 행위자가 신고인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행위는 2차 피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해당 내용을 인권센터에 공유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응 방안과 보호조치 여부를 함께 논의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접근 제한이나 공간 분리와 같은 보호조치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Q12. (공동저자 인정과 연구기여도) 연구데이터를 수집하고 실험을 주도했는데 실제 연구 기여도가 크지 않은 사람을 공동저자로 포함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문제제기를 할 수 있나요?

이는 연구성과에 대한 권리 및 연구윤리와 관련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연구윤리 위반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동저자 인정 여부는 연구 기여도, 연구윤리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상황에 따라 연구윤리부서 또는 인권센터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상황을 검토하고 대응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Q13. (연구과제 인건비 관리) 개인 계좌로 지급된 연구과제 인건비를 연구실에서 공용비처럼 사용하자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연구실 관행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문제 제기가 가능한가요?

학생 인건비를 공동 관리하거나 회수하여 사용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 및 연구비 관리 지침 위반 소지가 있으며, 사안에 따라 부당한 연구비 사용 문제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 관련 요청 내용 등을 자료로 보존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관련 부서 또는 인권센터 상담을 통해 대응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Q14. (보복 우려)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상대가 지도교수님입니다. 신고나 상담을 진행할 경우 논문 지도나 졸업 등에 불이익이 있을까봐 걱정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상담이나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나요?

인권센터는 신고인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문제 제기 이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에 따라 보호 조치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피신고인이 지도교수인 경우에도 사안의 성격에 따라 지도관계 조정, 공간 분리, 보호 조치 등의 방안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와 보호 범위는 상담을 통해 안내됩니다.

4. 인권침해 등에 대한 대응방법

4.1. 인권침해를 입은 사람

인권침해를 경험하였다면 다음과 같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안전 확보(인권침해의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 피해이후 불안, 두려움, 분노 등 다양한 감정을 경험할 수 있으며 이는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 있습니다.
- ☐ 즉각적 신체적 위험이 느껴지는 경우에는 개인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112 또는 119 등 긴급 지원 기관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 ☐ 안전이 확보된 이후에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나 상담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기록 및 증거 보존

- ☐ 사건이 발생한 시간, 장소, 상황, 관련자, 발언 및 행동내용 등을 가능한 사실 중심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 문자, 메신저, 이메일, SNS게시물 등 관련 자료가 있다면 삭제하지 말고 원본 형태로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사건 당시의 상황을 기억나는 범위에서 정리해 두면 이후 상담이나 사건 검토 과정에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 녹음이나 촬영의 경우 법적 쟁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필요할 경우 인권센터 상담을 통해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인권센터 상담 요청

- ☐ 인권침해 여부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상담을 통해 상황을 정리하고 가능한 대응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 상담은 신고나 조사절차로 자동 진행되지 않으며, 당사자의 의사와 상황을 존중하여 진행됩니다.
- ☐ 전화, 이메일,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호조치 및 후속 지원 요청

- ☐ 필요할 경우 가해자와의 공간 분리, 접근 제한 등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심리·의료·법률 상담 등 외부 전문기관과의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 ☐ 사건의 성격과 당사자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정, 조사 등 다양한 후속 절차가 안내될 수 있습니다.

혼자 해결하려 하지 않기

- ☐ 인권침해 상황은 개인이 혼자 감당해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 ☐ 주변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나 인권센터, 상담기관 등 전문기관의 도움을 통해 상황을 함께 검토 하고 대응 방법을 찾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 인권침해 등에 대한 대응방법

4.2. 목격자·제3자

인권침해의 가장 중요한 초기 개입자는 친구, 동기, 조교, 선배 등입니다. 따라서 인권침해 상황을 목격했거나 주변에서 알게 된 경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를 지지하기

- ☐ 피해자에게 '네 잘못이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이야기를 차분히 들어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 피해자의 감정과 경험을 존중하고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피해자의 의사 존중하기

- ☐ 사건을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결정은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신고나 상담을 강요하기보다는 가능한 선택지를 함께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건 내용의 확산을 방지하기

- ☐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불필요하게 전달하거나 소문을 확산시키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 피해자의 사생활과 안전을 고려하여 비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 안내하기

- ☐ 피해자가 원할 경우 인권센터, 상담센터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 정보를 안내할 수 있습니다.
- ☐ 필요한 경우 피해자와 함께 상담을 신청하거나 정보를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 도움 연결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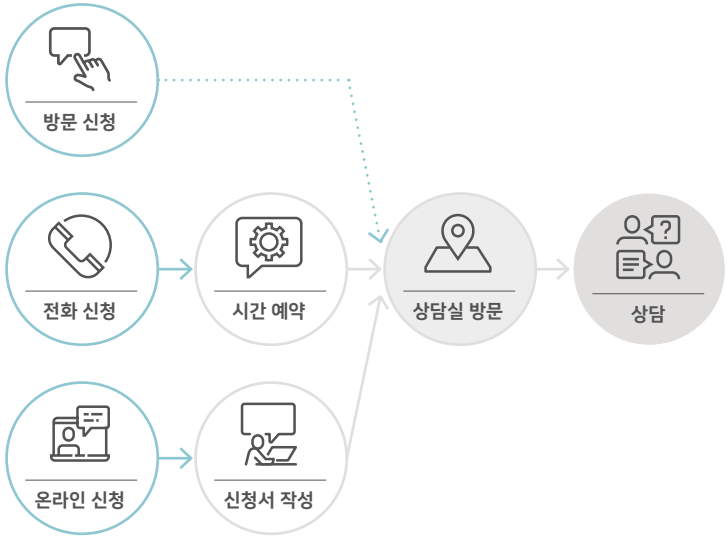
상황이 심각하거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인권센터나 전문 상담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상황에 따라 직접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개인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인권사건 처리 절차

5.1. 상담 신청 절차

본교 구성원은 인권침해, 성희롱·성폭력 등 인권 관련 사안에 대해 인권센터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은 사건 신고를 전제로 하지 않으며 상담을 통해 사안의 성격과 가능한 대응 방법에 대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신청은 전화, 이메일, 방문 등의 방법으로 가능하며 상담과정에서 인권침해 사실이 확인되거나 신고인이 원할 경우 공식적인 사건 신고 절차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5.2. 사건 처리 절차

인권센터에서 상담을 실시한 이후에는 사안의 내용과 피해 정도, 신고인의 의사, 사건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사건 처리 여부와 절차가 결정됩니다. 모든 사건이 심의 절차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며, 사안의 성격에 따라 각하(종결), 조정, 조사 및 심의 중 하나의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각 사건처리 절차에 대한 안내

1) **각하(종결):** 신고된 사안이 인권센터의 처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추가적인 검토나 절차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 없이 종결되는 것을 말합니다.

2) **조정:** 사안의 내용과 피해 정도, 당사자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원만한 해결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정 절차를 통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조정은 당사자의 자발적 참여를 원칙으로 합니다.

> **★옴부즈퍼슨 제도** 본교 구성원 간 갈등이 발생한 경우 공식적인 사건 절차와는 별도로 중립적·객관적 분쟁 해결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3) **조사 및 심의:** 당사자 간의 의견이 상충하거나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과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건은 심의위원회에 상정되어 조사 및 심의를 거쳐 사안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게 됩니다.

5. 인권사건 처리 절차

5.3.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인권침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대학은 피해자의 안전과 권리 보호, 그리고 사건의 공정하고 원활한 처리를 위해 다음과 같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비밀유지

인권침해 사건의 상담, 조사 및 처리 과정에서 직무상 해당 사안을 알게 된 사람은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건 관계인의 신원과 사건 내용을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비밀유지 원칙은 피해자와 사건 관계인의 사생활과 안전을 보호하고, 사건이 안정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불이익 금지

인권침해 사건을 신고하거나 상담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또는 사건 관계인은 신분상 불이익이나 부당한 처우를 받을 것에 대한 우려로 문제 제기를 망설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계 법령 및 대학 인권센터 규정에서는 신고·진술·증언·자료 제출 등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주어져서는 안 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긴급조치

긴급조치는 인권침해 행위가 계속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이를 방치할 경우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건의 본격적인 조사 이전이라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취해질 수 있는 임시적 조치를 말합니다. 긴급조치는 피해자의 안전 확보와 추가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며 사안의 성격과 필요성에 따라 제한적으로 검토·실시됩니다.

피해자의 보호 및 구제

대학은 인권침해 사건 이후 피해자가 2차 피해를 겪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과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이를 위해 심리·의료·법률 등 외부 전문기관 연계, 피해 회복을 위한 상담 지원, 행위자 또는 관련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재발 방지 교육 등의 조치를 통해 사건 이후의 회복과 재발 방지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6. 도움요청 기관

6.1. 교내 인권센터

인권센터 소개

한양대학교 ERICA 인권센터는 교직원과 학생 등 대학 구성원의 인권 보호와 권익 향상을 목적으로 설치·운영되는 기관입니다. 교내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차별행위, 성희롱·성폭력 피해에 대한 상담과 구제를 수행하며 인권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해 예방교육, 실태조사, 인식 개선 활동 등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권센터는 피해자 보호를 중심에 두고, 사건의 성격과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절차를 통해 안전하고 공정한 인권 보호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권센터가 하는 일

인권센터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1)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관련 상담, 조사, 조정, 심의 및 피해자 보호·구제
2)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법정교육과 인권 및 성평등 의식 증진을 위한 교육 운영
3) 교내 인권현황 실태조사 및 인권·성평등 관련 연구와 사업추진
4) 구성원의 인권 및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 콘텐츠 개발
5) 그 밖의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업무

※구체적 사업은 인권센터 누리집(홈페이지) 참고

인권센터 이용방법

기관	연락처
한양대학교 ERICA 인권센터	연락처 031-400-4311
	주소 안산시 상록구 한양대학로 55 학생회관 1층
	누리집 https://ehrc.hanyang.ac.kr/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hyhrc_erica/
한양대학교 서울 인권센터	연락처 02-2220-1444
	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학생회관 3층
	누리집 http://hrc.hanyang.ac.kr/

6. 도움요청 기관

6.2. 다양한 지원 기관

인권침해 지원기관

기관		연락처
인권침해	국가 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https://case.humanrights.go.kr) ☎ (국번없이) **1331**
체육계 인권침해	스포츠 인권상담	스포츠 윤리센터 (https://www.k-sec.or.kr) ☎ **1670-2876**
		경기도 스포츠인권센터 (https://ggshc.or.kr) ☎ **031-8008-4518**
직장내 괴롭힘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누리집 (https://www.moel.go.kr) ☎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https://labor.moel.go.kr/minwonApply/minwonFormat.do?searchVal=SN001)
연구윤리 위반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http://ericaresearch.hanyang.ac.kr/customer/report.php), **연구부정행위제보**

성희롱·성폭력 피해 지원기관

기관		연락처
여성폭력	여성긴급전화 1366	☎ (국번없이) 1366 (365일 24시간 상담가능)
		여성긴급전화1366 경기센터 (http://www.ky1366.or.kr) ☎ **031-206-1366** ☀카카오채널: 여성긴급전화1366경기
성폭력	해바라기센터	서울해바라기센터 (https://www.help0365.or.kr) ☎ **02-3672-0365** (365일 24시간 상담가능)
		(안산)경기서부해바라기센터 (http://ggwsunflower.or.kr) ☎ **031-364-8117** (365일 24시간 상담가능)
		(수원)경기남부해바라기센터 (https://www.ggsunflower.or.kr) ☎ **031-216-1117** (365일 24시간 상담가능)
	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https://www.sisters.or.kr) ☎ **02-338-5801**
		안산YWCA 여성과성상담소 (http://www.anycounsel.or.kr) ☎ **031-413-9414**

성폭력	성폭력피해자 법률지원	한국성폭력위기센터 (https://crisis-center.or.kr) ☎ **02-883-9284**
디지털 성범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한국여성인권진흥원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https://d4u.stop.or.kr) ☎ **02-735-8994** (365일 24시간 상담가능)
		서울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 (https://www.8150382.or.kr) ☎ **02-815-0382** ☀오픈채팅방(카카오톡): 디지털성범죄SOS상담
		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https://www.gwff.kr/031cut/) ☎ **1544-9112** ☀아이디(카카오톡): **031cut**
성희롱	성희롱·성폭력 근절종합 지원센터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성희롱·성폭력근절종합지원센터 (https://wecan.stop.or.kr) ☎ **02-735-7544**
범죄 피해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 (https://kcvc.kcva.or.kr) ☎ **02-537-1295**
		안산·시흥·광명 범죄피해자지원센터 (https://akcvc.kcva.or.kr) ☎ **031-405-1295**
	스마일센터	스마일센터총괄지원단 (https://resmile.or.kr) ☎ **02-333-1295** / gsg@resmile.or.kr
		수원스마일센터 ☎ **031-235-1295** / sws@resmile.or.kr

법률상담 기관

기관		연락처
교내	한양대학교	리걸클리닉 (http://legalclinic.hanyang.ac.kr) ☎ **02-2220-1009** / hylaw@hanyang.ac.kr
교외	대한법률 구조공단	안산출장소 (https://www.klac.or.kr) ☎ **031-482-2769**

심리상담 기관

기관		연락처
교내	한양상담센터	한양대학교 상담센터 (https://counseling.hanyang.ac.kr) ☎ **02-2220-0114**
		한양대학교 ERICA 상담센터 (https://mycounsel.hanyang.ac.kr) ☎ **031-400-5114**

7. 피해 자가점검 체크리스트

다음 체크리스트는 인권침해 여부를 단정하거나 판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현재 경험하고 있는 상황을 스스로 점검하고 상담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아래 문항 중 해당하는 것이 있다면 인권센터 상담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표시는 상담을 권장할 수 있는 핵심 문항입니다)**.

관계·위계 및 상황인식

- ☐ 상대방이 나의 학업, 연구, 평가, 근로, 진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 ☐ **해당 관계로 인해 불편함을 느꼈지만 거절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기 어려웠다. ★**
- ☐ 문제를 제기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것 같다는 우려가 들었다.
- ☐ 조교 업무, 연구지도, 개인 요청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느꼈다.

행위의 반복성·강제성

- ☐ **유사한 상황이 단발성이 아니라 반복되거나 지속되었다. ★**
- ☐ 거절 의사를 표현한 이후에도 요청이나 행위가 계속되었다.
- ☐ 즉각적인 응답이나 수행을 요구받는 등 심리적 압박을 느꼈다.

영향·결과

- ☐ **이 경험 이후 불안, 위축, 회피, 수면 문제 등이 나타났다. ★**
- ☐ 학업·연구·근로 수행에 지장이 생겼다.
- ☐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거나 혼자 감당하고 있다고 느꼈다.

참고: 고용노동부「직장내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 국가인권위원회법

한양대학교 대학원생 권리장전

목적

- 대학원 구성원들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평등권

- 모든 대학원생은 성별·국적·인종·연령·장애·종교·임신과 출산·정치적 또는 개인적 성향 등을 포함한 일체의 비합리적이거나 자의적인 사유를 근거로 차별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 대학원 집단 내의 모두가 지식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존중 받을 권리가 있다.

학업·연구권

- 모든 대학원생에게 정당하게 보장된 학업과 연구의 기회는 부당하게 박탈되어서는 아니되며, 학위과정을 마칠 때까지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학업이 중단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 모든 대학원생은 전공과 연구주제 분야에 대하여 필요한 시기에 충분하고 적절한 학문적 지도 및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모든 대학원생은 학업과 연구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내 연구 공간 및 지원 시설을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용할 권리가 있다.
- 모든 대학원생은 출산 및 보육으로 인해 학업 및 근로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공정(公正)권

- 모든 대학원생은 자신의 학업 및 연구결과에 대하여 공정(公正)한 평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
- 모든 대학원생은 자신의 학업 및 연구결과에 대한 평가에 공정(公正)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평가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평가자는 이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지식재산권

- 모든 대학원생은 연구 아이디어 제공, 연구 과정 참여 등 자신이 적극적으로 기여한 연구 출판물에 공저자(共著者)로 등록될 권리가 있다.
- 모든 대학원생은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자신의 주도적이고,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연구방법을 기반으로 한 연구결과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주저자(主著者)로서의 저작권 등을 포함한 지식재산권을 가진다.

거부권

- 모든 대학원생은 신체적·언어적·성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환경에서 학습하고 연구할 권리가 있으며 자신의 학업 및 연구와 관련성이 없고 사회통념에도 위배되는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이를 거부할 권리를 가지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사생활의 자유

- 모든 대학원생은 사생활의 자유를 가지며, 학업과 연구를 위해 상호 협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보장 받을 수 있다.

건강·안전권

- 모든 대학원생은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향유할 권리가 있으며, 필요시에는 적시에 충분하고 적정한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 모든 대학원생은 건강하고 지속적인 연구 활동을 위하여 충분하고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를 가진다.
- 모든 대학원생은 안전한 환경에서 연구할 권리를 가지며, 대학원은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하고 충분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

지도교수 변경의 권리

- 지도교수는 학위논문 및 연구지도에 주된 역할을 담당하여, 학생을 성실히 지도하여야 한다.
- 지도교수의 휴직, 파견 및 그 밖의 사유로 학생을 지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생이 지도교수 변경신청을 할 수 있다.
-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학생이 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희망하고, 대학원장이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반절차에 따른 지도교수를 변경할 수 있다.
- 대학원생은 지도교수 변경과정, 혹은 지도교수 변경 이후 지도를 받는 과정에서 차별 받지 않고 연구를 진행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참여권

- 모든 대학원생은 한양대학교의 모든 구성원과 함께 공동체의 평등한 구성원으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 모든 대학원생은 본 권리장전에 명기된 권리들이 구체화되고 실현되는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모든 대학원생은 대학원 자치조직을 구성하고 참여하거나 운영할 권리를 가지며, 학업 및 연구와 관련된 대학원의 의사결정 과정에 의견을 개진하고 반영할 수 있다.

전문은 일반대학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참고자료

<국내 자료>

2023 고용노동부. 직장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
2023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스토킹·데이트(교제)폭력 피해자 지원 안내서
2026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2016 대학원생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권고. 국가인권위원회
2024 디지털 성폭력 SOS 가이드 대학생용. 교육부
2025 성신인권센터 인권상담 매뉴얼
2018 캠퍼스 안전 데이트 안내서. 한양대학교 ERICA
2026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누리집 정책정보 여성폭력바로알기
2021 한양대학교 대학원생 권리장전
2025 한양대학교 인권침해 방지 및 처리에 관한 규정
2026 한양대학교 ERICA 인권센터 누리집(https://ehrc.hanyang.ac.kr)
2023 함께 만드는 인권존중 성평등 캠퍼스. 한양대학교 인권센터
2024 Q&A로 알아보는 대학 인권침해 사건처리 가이드. 한국대학성평등인권센터협의회

한양대학교 ERICA 인권센터로 오시는 길



한양대학교 ERICA 인권센터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한양대학로 55 학생회관 1층
TEL. 031-400-4311
누리집 https://ehrc.hanyang.ac.kr/

한양대학교 인권센터
경기도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학생회관 3층
TEL. 02-2220-1444
누리집 http://hrc.hanyang.ac.kr/

CAMPUS RIGHTS GUIDE

대학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 지침

학생 대상 안내서



발행일 2026년 2월
발행처 한양대학교 ERICA 인권센터
연구책임 홍정현 책임연구원
디자인 일스파지오

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인권센터의 동의 없이는 무단으로 발췌·복제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책자 내용은 한양대학교 ERICA 인권센터 누리집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